24. 12. 16. 오후 2:34 인쇄

#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

#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

병역감면 처리 기준

처분역종	처리기준	출원대상
전시근로역	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	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(복무중인 자 포함) 예비역의 병
보충역	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	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

## 출원시기

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(소집)기일 전일까지

## 구비서류

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 **바로가기** (지방병무청에 비치)

판결문 사본, 형사재판확정증명서(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)

#### 출원기관

지방병무청(지청) 민원실

#### 참고사항

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(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)

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

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